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5~25
----------	---------

제출연월일	2005. 5. .
제출자	거창군수

■ 개정이유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지원근거와 범위를 일치시키고,
-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용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등을 통해 국내·외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며,
- 투자유치 대상 업종 및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물류, R&D, 관광, SOC 등으로 확대하여 고용창출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의 정의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5항과 일치되도록 함 (안 제2조제5호 신설).
- 나. 공장부지 매입비를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용자지원하는 근거를 신설 함 (안 제6조).
- 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대상을 기존 제조업종 위주에서 관광·물류·R&D 까지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원범위를 신설함 (안 제8조).
- 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현금 지원과 조례에 규정된 각종 보조금과의 중복지원 불가 규정을 신설함 (안 제12조의2 신설).
- 마.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신청 시기 및 기한을 산업자원부의 국가재정지원기준과 일치되도록 하고, 교육훈련기관의 범위를 신설함 (안 제13조 및 제14조).
- 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재정지원 대상인 수도권 기업의 군내 이전 시 지원특례의 근거를 신설함 (안 제20조의2 신설).
- 사. 투자유치 유공 보상 범위에 인사우대를 추가 함 (안 제24조).

■ 개정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2004. 1. 13, 2004. 12. 31 개정)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2004. 1. 13, 2005. 3. 8 개정)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2004. 9. 30 개정)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기업및투자유치등에관한조례”를 “거창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2호 내지 제3호,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법”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4호 내지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
5.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7.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8.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11. "물류시설"이라 함은 「화물유통 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 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 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14.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제6조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산업단지 용지 매입
 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 지원
- ③ 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자 대상, 용자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의 제명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을 “외국인 투자의 지원”으로 한다.

제8조 제1항중 “보조금”을 “각종 보조금”으로, 같은조 제2항중 “내국기업”을 “내국인”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 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하면서 상시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자동차,항공우주, 조선, 생명 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2호의 2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제11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에게”를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로 한다.

제12조 제명의 “입지보조금”을 “입지지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 중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저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 차액을 보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조 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는”을 “지원 하는”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외국인 투자촉진법시행령 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로서” 삭제하며, 같은조 제3항 중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2조 내지 제15조에 규정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3조 제2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 이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20인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를 “외국인투자기업이 20명이상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6월 기간 내에서”로 하고, 같은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제2항 중 “보조금”을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중 “고용하기 위하여”를 “고용한 후”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중 “50만원 까지”를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로 하고, 같은조 제3항 중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총액이”를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로 하며, “3년간”을 “3년이상”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 제1항중 “외국인투자기업의”를 “외국기업의 투자”로 하고, 같은조 제2항중 “보조금”을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으로 한다.

제15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는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

제4장(제16조 내지 제18조)을 삭제한다.

제18조 제명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조 제1항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삭제하며, 같은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

③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지정 지구내에서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중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을 “의하여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로 한다.

제20조제2항중 “이전가액의”를 “공장시설 이전가액의”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구분되는”을 다음에 “별도의 사무용 건물을 취득 또는 임차하여”를 삽입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중 “동의”를 “사전 동의”로 한다.

제23조제1항중 “제20조의”를 “제20조의2의”로 한다.

제24조중 제명 “포상금의 지급”을 “투자유치 성공 보상”으로 하고,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지방세법”을 “ 「지방세법」 ”으로 하고, 제9조중 “거창군세감면조례”를 “ 「거창군세 감면조례」 ”로 하며, 제10조중 “경상남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 운용조례”를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하고, 제11조중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 「거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로 하며, 제25조중 “거창군보조금관리조례”를 “ 「거창군 보조금관리 조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생략)</p> <p>1.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p> <p>2. “외국투자기업”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p> <p>3. “외국인투자지역”이라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p> <p>1. ……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한다)……………</p> <p>2. ……법……………</p> <p>3. ……법……………</p> <p>4. “외국투자가”라 함은 법제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외국인을 말한다.</p> <p>5. “외국인 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p> <p>6. “입지보조금”이라 함은 군내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물류, 연구개발 또는 관광업 등의 공장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7.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공장·물류 또는 연구시설(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 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8. “교육훈련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 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현행	개정안
〈신설〉	9. "시설보조금"이라 함은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신설〉	10. "공장시설"이라 함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11. "물류시설"이라 함은
〈신설〉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12. "연구시설"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13.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목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시설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에 기계 또는 시설·장치를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나. 동일한 법인이 기존의 공장시설과 구분되는 회계상 별도로 계리될 수 있는 공장시설 또는 기계·시설·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다. 건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건축물을 인수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투자유치위원회는 건축공사의 진척에 따라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14. "이전보조금"이라 함은 도외에 소재하는 공장시설 등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거나 본점을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p> <p>15.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p>
<p>제6조 (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생략)</p> <p>② (생략)</p> <p>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p> <p>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 시 정상가액과의 차액</p> <p>3. 고용·교육훈련·시설·이전 등의 보조금</p> <p>4.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각종 보조금의 지급</p> <p>2. 임대 산업단지 용지 매입</p> <p>3. 공장부지 매입비 용자</p> <p>4.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용자대상, 용지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3장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p>	<p>제3장 외국인 투자의 지원</p>
<p>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p>	<p>제8조 (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① 각종 보조금</p> <p>.....</p> <p>.....</p> <p>.....</p>

현행	개정안
<p>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u>내국기업</u>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② <u>내국인</u></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기계,자동차,항공우주, 조선, 생명 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현행	개정안
<p>③ (생략)</p>	<p>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2호의2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p> <p>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5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p> <p>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1백만불 이상인 경우로서 영 제25조제3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p> <p>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 (지방세 감면) <u>외국인투자촉진법</u></p>	<p>제9조 (지방세 감면) <u>법</u></p>
<p>제10조 (금융지원) <u>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u></p>	<p>제10조 (금융지원) <u>법</u></p>
<p>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u>외국인투자촉진법</u>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u>외국인투자기업에게</u> 매각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및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거창군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1조 (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u>법</u> <u>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u></p>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③ 제2항에 의한 고용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3년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 (생략)</p> <p>② 제1항의 보조금은 내국인을 20인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월의 범위안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총액이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p>	<p>제14조 (교육훈련보조금) ①(현행과 같음)</p> <p>②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 고용한 후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p> <p>③ 교육훈련 보조금 지급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기업등록 후 5년까지만 지원하되, 기업당 지원총액이 3년이상.....</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p>

현행	개정안
<p>제15조 (시설보조금) ① 군수는 <u>외국인투자기업의</u>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u>보조금</u>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안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 (공장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15조 (시설보조금) ① <u>외국기업의 투자</u></p> <p>② <u>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u>..</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15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 지원) ① 군수는 제2조제5호에 규정된 <u>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제1항 <u>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때에 지원하는 사업비 및 운영비는 <u>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u> 2. 영 제2조제5항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군수는 <u>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2억원 이내</u>

현 행	개 정 안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삭 제>
<p>제16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외 <u>국민 투자 지역외에 입지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은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투자비율 및 지원금액 등은 제8조에서 정한 것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30명 이상인 경우 2.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산업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경우 	<삭 제>
<p>제17조 (외국인투지지역외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① <u>군수는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정 산업단지의 일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분양가 차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삭 제>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 차액 보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의한 공장입지면적을 기준으로 정상적인 분양가의 50%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영위하여야 한다.</p> <p>③ 제16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삭 제></p>
<p>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① 군수는 경상남도(이하"도"라한다)의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u>필요한 경우에는</u> 다음 각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8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등)</p> <p>①</p> <p>.....</p> <p><삭제>.....</p> <p>.....</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②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지구 지정일 현재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이하이거나 분양가능면적이 최소 1만평 이상이어야 한다.</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p>제20조의2 (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이전 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 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할 때에는 50억원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제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2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u>사전 동의</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군수는 제12조 내지 제20조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제23조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u>제20조의2</u>의</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4조 (포상금의 지급)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24조 (투자유치 성공 보상) <u>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u></p>